

영국 중세 영지경영제도의 연구와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고찰

金 豪 然*

I.

로저스(J. E. T. Rogers)에 의하면 직영지(demesne)의 임대(leasing)는 혹사병 이후에 중요성을 갖는 제도이며 임차인은 농민들(peasants)이 있다.¹⁾ 직영지의 임대에 대한 로저스의 연대 설정은 직영지의 임대가 드물기는 하나 13세기 후반에도 시행되었음이 밤혀짐에 따라 다소 수정되게 되었다.²⁾ 그렇기는 하나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직접 경영(direct management)하는 영주직영제(demesne farming)³⁾는 혹사병을 계기로 임대제도로 급격히 바뀌었다는 로저스의 기본 입장은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⁴⁾ 따라서 20세기의 전반까지 이르는 직영지 임대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르만(Norman)왕조 성립 이후 200~250년 간의 기간은 직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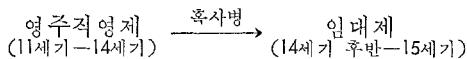
* 사학과 강사

- 1) J. E. Thorold Rogers, *A History of Agriculture and Prices in England, 1259-1793*, I (Oxford, 1866), pp. 667ff.
- 2) 예를 들어 1279년 처럼 이런 시기에도 Ramsey 수도원의 한 장원은 그 장원의 토지보유인들(tenants)에게 임대되었다가 7년 뒤에 회수되고 있다. A. E. Bland, P. A. Brown, and R. H. Tawney, *English Economic History: Select Documents* (London, 1914), p. 79.
- 3) 이 제도는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경영(direct management)하는 직영제도를 말하는데, 이 경영방법이 역사가에게는 demesne farming으로 알려져 있다. P. D. A. Harvey에 의하면 이 용어는 모순되고 혼란스러우며 잘못된 표현이다. 중세의 용어에서 farm은 rent였으며, farmer는 lessee였기 때문이다. P. D. 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 (London, 1976), p. 12.
- 4)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I (London, 12th edn, 1959), p. 119의 설명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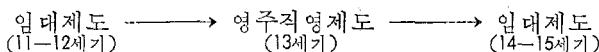
의 입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흑사병 이후인 14~15세기에 죄영지의 입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이때의 임차인은 농민들로서 직영지가 농민들에게 분해되어 임대
됨으로써 장원은 그 기능이 정지되어 봉과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의 견해는 영국 중세경제를 흑사병을 전후로 하여 2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영지경영에 대한 이들의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영지경영제도에 대한 2분법적 시대구분은 중세경제의 변동에 대한 포스탄(M. M. Postan)의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수정이 시작되었다. 포스탄은 중세시대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과거에 제시되었던 개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중세시기도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기후와 수확, 정치상황이나 기타의 어건에 따라 상응하는 짧은 경제변동이 있었으며, 이를 짧은 경제변동은 더 장기적인 경제변동의 성쇠에 덧붙여진다고 보고있다.⁵⁾ 포스탄에 의하면 이 같은 경제변동의 상황 속에서 12세기와 13세기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다. 즉, 12세기는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영주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직접 경영하기에 불리한 시기였다. 따라서 영지 경영은 봉작(farmer)들에게 임대하여 경영하던 간접 경영의 시기였다. 이에 대하여 13세기는 정치, 경제적인 조건이 개선되어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직접 경영하던 영주직영의 시대였다.⁶⁾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같은 포스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의 견해와 크게 대조

5) M. M. Postan, introduction to J. A. Raftis, *The Estates of Ramsey Abbey: A Study of Economic Growth and Organization* (Toronto, 1957), p. ix.
6) 이 같은 포스탄 이론의 혁선판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Ⅱ장 참조.

6) 이같은 포스탄 이론의 형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장 참조.

가 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판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 중세 영국 경제사에 대하여 전통적인 2분법적 시대구분을 지양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경제변동에 따라서 더 여러 국면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14세기 중엽 흑사병 이전의 시대를 영주 직영의 시대로만 보았던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하고, 12세기를 영지 임대의 시대로, 13세기를 영주직영제가 다시 강화된 시대로 보고 있다.

둘째, 기존의 견해에서는 흑사병 이후 직영지 임차인은 농민들(Peasants)로서 그들은 직영지의 일부분씩을 분할하여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난 장원의 봉과 현상은 직영지의 임대와 그에 따른 금납화의 확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포스탄이 제시하는 12세기의 임차인은 로저스가 말하는 농민들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간 계층의 사람들(middlemen)로서 영주와 농민들 사이에 위치했던, 농민들보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 때의 임대지 역시 분할된 직영지의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직영지의 전체 또는, 장원 전체였다.⁷⁾ 따라서 영지의 직접 경영이 불리하였던 12세기에는 영지를 장원이나 직영지 단위로 임대하였고, 유리하였던 13세기에는 다시 회수하여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스탄은, 12세기에 나타난 직영지의 임대를 장원의 봉과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서 보다는 오히려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영하려 했던 하나의 경영 형태로 보고 있다.⁸⁾

셋째, 이와 같은 포스탄의 견해는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영주 계층이 그들의 영지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근의 일부 학자들은 영주 계층을 유한 소비자 계층으로만 생각했던 종래의 견해에서 벗어나, 그들이 하나의 생산관리 계층이었다는

7) 이 같은 12세기를 포스탄은 "wholesale farming of manors"의 시대라고 말한다.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 (Cambridge, 1966), p. 585.

8) M. M. Postan, "The Rise of A Money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IV, 1944; M. M. Postan, *Essays on Medieval Agriculture and General Problems of the Medieval Economy*(Cambridge, 1973, 이하 E. M. A.로 약함), pp. 28~40 재수록.

점을 새로이 인식하여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⁹⁾

포스탄에 의해서 제시된 새로운 견해는 50년대와 60년대의 연구에 의해서 그 이론적 체계가 수립될 수 있었으며, 70년대에 들어서서 통계적으로 이론이 겸증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12세기와 13세기 사이의 기본적인 경제적 동향이 중세 영국 경제사의 시대구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¹⁰⁾와 더불어, 양세기 사이에 대비되는 영지경영제도의 변화 역시 시대구분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지경영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영지경영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이론화되었는가? 둘째,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었으며, 또 그같은 변화를 야기시킨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세째, 영지경영제도의 변화가 영지경영과 농민지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영지경영제도의 연구가 갖는 역사적 의의 및 현재의 영지경영제도의 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고찰될 것이다.

II.

12세기 영국의 사회경제에 대한 포스탄의 새로운 연구는 1937년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인 「부역의 연대기」¹¹⁾로부터 시작된다. 포스탄은 이 논문에서 현존하는 12세기의 장원영지 조사서들을 분석하여 영국의 12세기 장

9) 이의 대표적인 학자는 E. Miller 와 J. Hatcher이다. 그들의 저서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London, 1978)는 그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10) Edward Miller, "England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An Economic Contrast?", *Economic History Review*, XXIV No. 1, 1971, p. 1.

11) M. M. Postan, "The Chronology of Labour Services.", *Trans. Roy. Hist. Soc.*, 4th Series, XX, 1937. M. M. Postan, *E. M. A.*, pp. 89~106 제 수록.

원 경제에 대하여 기존의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포스탄에 의하면 12세기의 장원에 대한 기록문서들은 중세 말 장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직영지의 임대, 부역의 금납화, 직영지 면적의 축소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12세기 영국의 경제적 상황은 이미 코스민스키 (E. A. Kosminsky)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부역의 강화, 직영지 면적의 확대 등 봉건반동 현상으로 요약되는 13세기의 상황¹²⁾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포스탄의 연구로부터 장원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직선적인 변화를 겪어왔다는 종래의 견해는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장원영지의 경영에 대한 포스탄의 새로운 연구는 1944년 그의 논문 「화폐경제의 성장」에서 더 본격화되어 이론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포스탄은 12세기와 그 이전부터도 나타났던 farm 제도는 중세 말 계약차지를 의미했던 farm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포스탄에 의하면 노르만 왕조 초기부터 존재했던 farm 제도를 장원경제의 초기 단계인 현물지대의 단계로 해석하는 기존의 견해는 farm 제도가 갖었던 역사적, 경제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farm 제도의 특징은 현물지대가 아닌 고정된 지대라는 데에 있다. 이 제도는 영주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직접 경영하기에 불리한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수입 대신에 고정된 수입을 원했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5세기에 보편적이었던 farm 제도와 12세기와 그 이전에 나타났던 farm 제도는 성질상 동일한 것이다.¹³⁾

이같은 포스탄의 주장은 노르만 왕조의 초기인 11세기 말에서부터 15세기까지 장원 영지의 경영 방법이 farm 제도에서 영주 직영제도를 거쳐 다시 farm 제도로 바뀌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소수의 영지 조사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조사된 어느 영지에서도

12) E. A. Kosminsky, *Studies in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in the thirteenth century*(Oxford, 1956), pp.210~212.

13) M. M. Postan, "The Rise of A Money Economy.", *Economic History Review*, XIV, 1944, M. M. Postan, *E.M.A.*, pp.28~40 재수록.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영지 경영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포스탄의 주장은 우연적,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증거에 의한 새로운 가설에 불과한 것이었다.

포스탄의 가설에 대한 단일 영지에서의 검증 시도는 1953년 그의 논문 「12세기 글래스톤베리 영지」¹⁴⁾에서 였다. 애초에 이 논문은 12세기에 직영지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단일영지의 예에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즉 포스탄은 12세기 동안 글래스톤베리 영지에서의 직영지 면적의 축소를 직영지 경작에 필요로 했던 이경(犁耕) 가축 팀(plough-team)의 숫자 감소를 증거로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논문은 레나드(R. V. Lennard)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레나드에 의하면 포스탄의 주장은 장원 영지가 영주의 직영 하에 있을 때에만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직영지가 농민(farmer)들에게 임대되고 있었다면 그 때의 영지 조사서에서 나타나는 이경 가축 팀의 숫자는 영주가 농민들에게 경작자와 함께 임대해 주었던 숫자만을 의미하게 되어, 이경 가축 팀의 숫자 감소로 직영지 면적의 축소를 추론하는 포스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된다. 실제로 1171년의 경우 38개의 장원 가운데 32개의 장원이 임대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1135년 경인 12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포스탄이 주장하는 12세기의 직영지 면적의 축소는 그같은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¹⁵⁾ 이같은 레나드의 비판은 영지경영 상태에 대한 포스탄의 반박으로 나타났다. 포스탄에 의하면 글래스톤베리 장원영지는 1198년에는 38개의 장원 가운데 9개의 장원만이 임대되고 있었다. 1171년의 경우에도 임대되었던 장원의 수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의 영지조사서에 나타나는 농민들에 대한 언급은 당시

14) M. M. Postan, "Glastonbury Estates in the Twelf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 1953. M. M. Postan, E. M. A., pp. 249~261
재수록.

15) Reginald Lennard, "The Demesnes of Glastonbury Abbey in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II, 1956, pp. 355~363.

의 파미들이 아닌 그보다 더 이전 시기인 12세기 초에 대한 것이었다.¹⁶⁾ 이 같은 포스탄의 반박에 따라 양자 사이의 글래스톤베리 수도원령의 영지 경영에 대한 이견은 주로 12세기의 후반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었다. 그후 양자 사이의 영지경영에 대한 논쟁은 헤나드의 재비판¹⁷⁾과 포스탄의 재반박¹⁸⁾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논쟁은 글래스톤베리 장원영지의 조사서에 나타나는 영지경영 형태에 대한 사료상의 해석의 차이로¹⁹⁾ 양자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논쟁은 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12세기 초에는 장원영지가 임대제도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다는 점에는 양자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포스탄의 가설로 시작된 영지 경영의 변화에 대한 이론은 적어도 12세기 초에 대해서는 단일영지의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 셈이며, 호이트(R. S. Hoyt)와 헤나드의 계속되는 연구로 12세기 초의 임대제도가 더욱 확실히 밝혀지게 되었다.²⁰⁾ 그러나 12세기 후반과 13세기에 있어서의 영지경영의 문제, 특히 어느 시기에 영지경영제도가 임대제도로부터 영주직영제도로 바뀌었는가 하는 문

16) M. M. Postan, "Glastonbury Estates: A Reply.",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VII, 1956. M. M. Postan E. M. A., pp. 261~277 재수록.

17) R. V. Lennard, "The Glastonbury Estates: A Rejoinder." with the introduction of B. F. Harvey and E. Stone,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XVIII, 1975, pp. 517~523. 이 논문은 1959년에 작성된 것이었으나 동일한 주제에 대한 논쟁의 글은 3편 이내로 제한했던 *Economic History Review*의 방침에 따라 당시에 게재되지 못했었다(Ibid., p. 524 no. 1 참조). 이에 대한 포스탄의 재반박 논문도 마찬가지였다.

18) M. M. Postan, "The Glastonbury Estates: A Restatement.",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XVIII, 1975, pp. 524~527.

19) 예를 들면 1171년경 Street 장원의 영지조사서에서 나타나는 '*tempore regis Henrici quando fuit ad firmam erant ibi iij caruce...et iiij d. Cum tali instauro redditus c s. Modo sunt ibi xv boves...et v alet xl ix s. et vi d.*' 의 문장을 Postan은 '파커 Henry 왕의 치세 시에 임대될 때의 가축은 X..., 그러나 현재의 장원에서의 가축은 Y이다'라고 해석하여 현재의 장원은 임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Lennard는 기록상에 나타나는 reddit는 farmer가 지대를 지불한 것으로 해석하여 조사 당시의 장원은 farmer에게 임대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포스탄의 반박 논문 pp. 271~2, 헤나드의 재비판 논문 p. 522 참조).

20) Robert S. Hoyt, "Farm of the manor and Community of the Vill in Domesday Books.", *Speculum*, XXX, No. 2, 1955; R. Lennard, *Rural England 1086-1135: a study of social and agrarian conditions* (Oxford, U.P., 1959).

제는 여전히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영지경영제도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크게 진전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이 수립될 수 있게 되었다. 영지경영제도가 장기간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연구가 1966년 두 불레이(F. R. H. Du Boulay)에 의하여 완성되었다.²¹⁾ 두 불레이는 노르만 정복으로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캔터베리 대주교령에서의 영지가 어떻게 조작되고 경영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두 불레이에 의하면 영지경영제도가 임대제도에서 영주직영제도로 바뀐 것은 1200년 경이었으며, 다시 임대제도로 환원된 것은 1400년 경이었다. 두 불레이에 의하면 캔터베리 대주교령에서의 영지경영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이 된다.

첫째 시기는 1086년~1200년 사이의 시기로, 이때는 대부분의 직영지가 전체 단위로 파머에게 임대되었던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1200년~1400년 사이의 시기로 장원이 영주에 의해서 직접 경영되었던 시기이다.

세째 시기는 1380년~1390년에 재임대가 시작되어 1440년까지는 모든 영지가 임대되었던 시기이다. 그 이후로 직영지는 다시 영주직영제도로 전환되지 않고 파머나 혹은 농민들에게까지 장·단기로 임대됨에 따라 13세기에 나타났던 장원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불레이의 연구는 포스탄이 제시하였던 영지경영 형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캔터베리 대주교령에서의 영지경영제도의 변화는 영주에 의한 장원영지의 직접경영 시대가 1086년 이후 중세 말 장원제도 자체가 붕괴될 때까지 오로지 13~14세기에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전형적인 영지경영제도로 생각되었던, 그리고 reeve나 bailiff 등 장원관리인에

21) F. R. H. Du Boulay, *The Lordship of Canterbury: an essay on medieval society*(Nelson, 1966).

의해서 경영되었던 영주 직영제도는 실제에 있어서는 임대제도라는 긴 경영제도 사이에 나타났던 막간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는 두 블레이의 결론²²⁾은 적어도 11세기 이후의 상황에서는 타당하며, 또 이후의 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²³⁾

두 블레이의 연구가 발표되었던 1066년에 포스탄은 「캐임브리지 유럽 경제사」에서 그가 제시했던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포스탄이 정립한 영지경영제도에 대한 연대 구분과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국면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1130년～1175년 사이의 시기로 영지 임대제도가 일반적이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스티븐(Stephen)왕과 그의 외사촌인 마틸다(Matilda) 사이의 왕위 다툼으로 인한 내란 상태의 혼란기였으므로, 영주들이 그들의 영지 통제와 영지로부터의 생산물 수송이 곤란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영주들은 고정적이기는 하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지를 임대하였다.

둘째는 1175년～1325년 사이의 시기로 영주에 의한 직점경영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법과 질서가 회복되었고 생산물의 수송이 보장되었던 정치적 안정기이며, 인구 증가와 임금하락, 곡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호황기였다. 이에 따라서 영주들은 그들의 영지를 회수하여 직점 경영하게 되었고, 직영지에 대한 투자와 영지의 효율적인 이용, 곡물 생산의 증대를 통한 수입의 증가를 꾀하게 되었다. 이때 농민들에게 임대되어 경영되었던 영지가 영주 직영제로 바뀐 결정적인 기간은 1185년～1225년 사이였다.

세째는 제 2 국면 이후의 시기로 이때는 직영지의 침체기이며 직영지를 재임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직영지의 침체 및 재임대 현상은 혹사병 이전의 시기부터, 특히 1315～17년의 흉작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2) *Ibid.*, p.197.

23) 예를 들어 P. D. A. Harvey 역시 영주직영제가 13～14세기에만 나타났던, 진 임대제도 속에서의 예외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 P. D. 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 p. 12.

14세기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²⁴⁾

이상과 같이 1960년대까지의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 주원인이 정치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영주제 층의 대응으로 제시됨과 더불어, 그 변화에 대한 모델을 수립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는 하나 중세 영국에서의 장원영지 경영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해결되어져야 할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노르만 왕조 초기인 11세기 후반과 더 이전 시대인 앵글로색슨 시대에 장원영지가 어떻게 경영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더 밝혀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더 장기적인 경영제도 변화에 대한 추세를 알 수가 있으며, 두 블레이의 주장대로 중세 장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되었던 영주적 영제도가 실제로는 13~14세기에만 국한되었던 현상이었는가 또는 그렇지 않았는가를 명확히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의 증거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이 아닌 간헐적으로만 존재하는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이론의 바탕이 되었던 장원영지 조사서가 매우 소수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2세기에 대한 장원영지 조사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²⁵⁾ 따라서 장원영지의 경영제도에 대한 변화의 연구는 두 블레이의 연구와 포스탄의 이론적 모델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인 연구로 그 변화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 그같은 이유로 영지경영제도의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1200년 경을 전후하여 어느 정도 영지경영제도에서 변화가 나타났는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 광범위한 장원영지에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게 되었으며, 장원영지의 조사서 이외의 다른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논리적인 이론화의 단계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24) M. M. Postan 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 pp. 580~590.

25) 12세기의 장원영지에 대한 조사서는 모두 12개 뿐이며, 1937년 포스탄의 논문은 이를 분석하여 연구한 것이다. P. D. 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 p. 73 참조.

III.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이상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Pipe Rolls에 나타나는 영지경영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Pipe Rolls은 1155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는 왕실의 재정수입에 대한 기록 문서로, 왕의 직신(直臣)들의 재산이 후견이나 재산 귀속, 혹은 몰수 상태에 있을 때 또는, 주교나 수도원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들 교회나 수도원의 영지들에 대한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영지가 어떤 상태로 경영되고 있었는가를 밝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증거도 해당 영지가 잠시동안 왕의 수입으로 귀속되었을 때 뿐으로 증거 자체가 매우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난해한 것이다.²⁶⁾ 그렇기는 하나 Pipe Rolls은 영지경영에 대한 변화를 전체 영지에서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제까지 알려진 유일한 증거 자료로 평가되어지고 있다.²⁷⁾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밀러(E. Miller)였다. 밀러는 1971년 그의 논문과²⁸⁾ 1978년 그의 저서에서²⁹⁾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영지에서의 경영제도에 대한 변화를 밝혀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³⁰⁾

1. 1170~1180년대에 대부분의 장원을 임대하여 경영하였던 영지 : 8.

26) P. D. A. Harvey, "The Pipe Rolls and the Adoption of Demesne Farming in England".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XVII, No. 3, pp. 345 ~354.

27) P. D. A. Harvey, "The English Inflation of 1180—1220.", *Past and Present*, No. 61, p. 4.

28) E. Miller, "England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an Economic contrast?", pp. 1~14.

29) Edward Miller, John Hatcher,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 pp. 204~213.

30) 이 표는 주로 1971년의 논문 pp. 3~4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 | |
|-------------------------|-------------------------------|
| ① A. of Hide 영지. | ② A. of Glastonbury 영지. |
| ③ A. of Barking 영지. | ④ A. of Peterborough 영지. |
| ⑤ A. of Westminster 영지. | ⑥ A. of Malmesbury 영지. |
| ⑦ A. of Selby 영지. | ⑧ A. of Bury St. Edmund's 영지. |

2. 1160~1190년 대에 임대제도가 우세하였던 영지 : 8(그러나 조사 당시에 임대기간이 만기기에 달하고 있었던 영지임).

- | | |
|------------------------------|----------------------------|
| ① AB. of York 영지(1182). | ② B. of Bath 영지(1167). |
| ③ B. of Chichester 영지(1170). | ④ B. of Chester 영지(1184). |
| ⑤ B. of Exeter 영지(1192). | ⑥ B. of Ely 영지(1171). |
| ⑦ B. of Lincoln 영지(1167). | ⑧ B. of Winchester (1172). |

3. 헨리 II세(1154—1189) 시기에 일부 장원~영지의 모든 장원이 임대 되었던 속인(俗人)영지 : 7.

- | | |
|----------------------------|------------------------------|
| ① H. of Richmond 영지. | ② H. of William Peverel 영지. |
| ③ H. of Henry of Essex 영지. | ④ H. of William de Curci 영지. |
| ⑤ H. of the Constable 영지. | ⑥ H. of Wallingford 영지. |
| ⑦ H. of Arundel 영지. | |

4. 리차드 I 세(1189~1199) 때에도 일부 장원들이 임대되었던 영지 : 2.

- | | |
|------------------------|------------------------|
| ① H. of Gloucester 영지. | ② A. of St. Valery 영지. |
|------------------------|------------------------|

5. 1160년대와 1180년대에 전체 장원들이 직영되었던 영지 : 3.

- | | |
|-------------------------------|-------------------------------|
| ① B. of Hereford 영지(1167). | ② A. of Cirencester 영지(1187). |
| ③ B. of London 영지(1187—1188). | |

6. 1182년에 임대제도가 영주직 영제로 바뀌기 시작하여 1186년까지는 모두 영주직 영제로 바뀐 영지 : 4.

- | | |
|------------------------|---------------------|
| ① B. of Dorchester 영지. | ② B. of Thame 영지. |
| ③ B. of Banbury 영지. | ④ B. of Buckden 영지. |

7. 1209년과 그 이전까지 영주직영제로 바뀐 영지 : 3.

① B. of Winchester 영지 ② B. of Lincoln 영지.

③ AB. of Canterbury 영지.

※ A=Abbey, B=Bishop, AB=Archbishop, H=Honour.

밀러가 제시하는 자료에서 다음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조사된 35개의 영지는 교회영지가 17, 수도원영지가 10, 속인 영지가 8곳으로 교회나 수도원영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Lincoln 주교령과 Winchester 주교령의 영지에서는 1160~1170년대의 임대제도에서 1200년대에는 영주직영제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영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셋째, 그렇기는 하나 1180년대에는 임대제도에서 영주직영제로 급격히 바뀐 4개의 주교령을 비롯하여 다수의 성·속(聖俗)영지가 임대제도에서 영주직영제로 바뀐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밀리는 영지경영제도가 임대제도에서 영주직영제로 바뀐 이유를 물어 상승에 의한 영주의 실질수입 감소, 임대제도가 갖는 문제점 등에서 찾고 있으며, 처음에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영주들이 방어적으로 영주직영제를 채택하였으나 점차로 적극적이며 기업적인 태도로 영지를 직접 경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밀리에 의하면 영주직영제가 도입된 것은 “전통적으로 지주계급이었던 장원 영주가 농업기업가로 전환된 것³¹⁾”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13세기의 장원은 그것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각되는 고전적 장원의 완전한 발달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영주계층은 “경영 혁명”³²⁾을 통하여 확대되는 시장으로부터 가장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였던

31) E. Miller, John Hatcher,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 p.210.

32) *Ibid.*, p.210.

영주의 고도한 농업 경영 (high-farming landlord)의 시대³³⁾를 맞이하게 되었다.

Pipe Rolls의 자료를 통한 영지 경영제도의 연구는 밀러에 이어 1974년 하비 (P. D. A. Harvey)에 의하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³⁴⁾ 하비는 1155년~1216년 사이의 Pipe Rolls 가운데 영지 경영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42개의 영지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하비가 조사하여 연구한 42개의 영지는 교회 영지가 12, 수도원 영지가 13, 속인 영지가 17개이다. 이들 영지의 분포는 전국적이며 영지 규모로는 대영지와 중간 규모의 영지들이다. 하비가 조사하여 연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³⁵⁾

1. 교회 영지 : 12.

1) B. of Lincoln

- 1167—1172 : 거의 전부 f.
- 1181—1183 : 거의 전부 f.
- 1185—1186 : 대부분 f.
- 1206—1207 : 주요부분 d.
- 1212 : 주요부분 d.

2) AB. of York

- 1186—1189 : 적어도 1장원은 f.
- 1194—1197 : 대부분 d.
- 1212 : 반 이상이 d.
- 1214—1215 : 반 이상이 d.

3) AB of Canterbury

- 1184 : 대부분 f.
- 1206 : 대부분 d.
- 1211—12 : 대부분 d.

4) B. of Salisbury

- 1185 : 부분 d.
- 1186 : 2장원 d. 5장원 f.
- 1187—1188 : 3장원 d. 4장원 f.
- 1211—1212 : 거의 전부 d.

5) B. of Durham

- 1196 : 대부분 d.
- 1208—1212 : 대부분 d.

6) B. of Exeter

- 1207 : 주요부분 d.
- 1211—1212 : 주요부분 d.
- 1214 : 주요부분 d.

7) B. of Ely

- 1170—1172 : 거의 전부 : f.

8) B. of Winchester

- 1172 : 대부분 f.

33) 영주 지영의 시대였던 13~14세기를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Ibid.*, pp. 213 ~224 참조.

34) P. D. A. Harvey, "The Pipe Rolls and the Adoption of Demesne Farming in England.", pp. 345~354.

35) *Ibid.*, pp. 355~358(Appendix I).

- 9) B. of Rochester
◦ 1184—1185 : 주요부분 d.
11) B. of Chester and Coventry
◦ 1195—1196 전부 f.
- 10) B. of London
◦ 1187—1189 : 부분 d.
12) B. of Chichester
◦ 1210—12 : 주요부분 또는 전부 d.

2. 수도원영지 : 13.

- 1) Hyde A.
◦ 1173—1175 : 부분 d.
◦ 1206 : 5장원 f. 6장원 d.
3) Sherborne A.
◦ 1189 : 부분 d.
◦ 1212 : 14장원 d. 2장원 f.
5) Abingdon A.
◦ 1185—1186 : 부분 d.
7) Cirencester A.
◦ 1187 : 주요부분 d.
9) Leicester A.
◦ 1188 : 부분 d.
11) Eynsham A.
◦ 1210—1211 : 대부분 d.
13) Milton A.
◦ 1212 : 전부 d.
- 2) Peterborough A.
◦ 1177 : 대부분 f.
◦ 1210—1211 : 반이하 d.
4) Ramsey A.
◦ 1202 : 5장원 d. 16장원 f.
◦ 1207 : 5장원 d. 16장원 f.
◦ 1210—1212 : 반정도 d.
6) York A.
◦ 1185—1186 : 부분 d.
8) Malmesbury A.
◦ 1187 : 부분 d.
10) Abbotisbury A.
◦ 1210—1211 : 대부분 d.
12) Canterbury Cathedral Priory
◦ 1211—1212 : 대부분 d.

3. 속인영지 : 17.

- 1) H. of Haughly
◦ 1170 : 쳐어도 일부 f.
◦ 1184—1185 : 거의 전부 f.
◦ 1207 : 전부 d.
◦ 1211—1212 : 주요부분 d.
3) L. of William de Curci
◦ 1187 : 4장원 f. 1은 d. 1은 미상.
◦ 1188—1189 : 5장원 f. 1장원 d.
- 2) H. of Gloucester
◦ 1184—1185 : 반 이상 d.
◦ 1198—1208 : 전부 d.
4) H. of Boulogne
◦ 1187—1188 : 전부 f.
◦ 1194—1196 : 전부 f.

- | | |
|--------------------------------|---------------------------------|
| 5) H. of Rayleigh | 6) H. of Chester |
| ◦ 1181 : 전부 f. | ◦ 1182—1183 : 전부 f. |
| 7) H. of Alnwick | 8) L. of Herbert son of Herbert |
| ◦ 1184—1185 : 일부 d. | ◦ 1185 : 부분 d. |
| 9) L. of Thomas Muschamp | 10) L. of the Count of Brittany |
| ◦ 1185 : 부분 d. | ◦ 1190—1191 : 전부 f. |
| 11) L. of Ralph of Cornhill | 12) H. of Ely |
| ◦ 1194 : 전부 d. | ◦ 1194—1196 : 3장원 f. 2장원 d. |
| 13) L. of William de Longchamp | 14) L. of William Braose |
| ◦ 1204 : 전부 d. | ◦ 1210 : 대부분 d. |
| 15) L. of William Beauchamp | 16) H. of St. Valery |
| ◦ 1210—1211 : 대부분 d. | ◦ 1211 : 반정도 d. |
| 17) H. of Berkhamsted | |
| ◦ 1214 : 전부 d. | |

※ A=Abbey. B=Bishop. AB=Archbishop. H=Honour.

L=Land. f=임대(farm) d=직영(direct management)

대부분=most. 거의 전부=all or nearly all. 부분=part.

주요부분=substantial

이상의 연구된 자료로써 하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1170년대에는 영주직영에 의한 장원경영이 적었으며, 영지경영제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기는 1184년부터이다. 그렇지만 30년 이후인 1215년 경에도 모두 영주직영제로 바뀌지는 않았다. 하나의 영지 전체가 모두 임대되었던 마지막 경우는 1196년이며, 하나의 영지 전체가 모두 영주직영제로 바뀌었던 최초의 경우는 1194년이다.

둘째, 1210~1214년 사이의 5년간은 3분의 2가 직영됨을 추정할 수 있으나 거의 모든 영지에서 몇몇 장원은 여전히 임대되고 있다.

세째, 거의 모든 형태의 영지에서 거의 동시에 변화가 일어났으나, 속인 영지에서의 변화가 제일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전히 영주직영제로 바뀐 6개의 영지 가운데 5개가 속인 영지이다.

네째, 지역적인 대비가 분명하다. 동부잉글랜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

하여 훨씬 보수적이다. 1180년대에 모두 임대되고 있던 영지는 전부 템즈(Thames)강과 휴버(Humber)강 사이에 놓인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영지들은 존왕 때(1199—1216)에도 영지의 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부, 남부, 서부지역 사이에서는 차이가 감지되지 않으며, 영지의 규모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지도 않다.³⁶⁾

Pipe Rolls이 연구됨에 따라 60년대에 수립되었던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은 적어도 그 일부가 사료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즉, 1200년을 전후하여 임대제도에 의하여 경영되던 장원영지는 영주직영제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1200년을 전후하여 중세 영국에서는 영지경영제도가 임대제도에서 영주직영제로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1160년대 이전의 시기, 특히 Pipe Rolls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영지경영제도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영주직영제도가 1200년을 전후하여 영지경영제도로서 처음 도입되었던 것인지 또는 더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제도가 다시 부활되어 일반화되었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밝혀낼 수 없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면 12세기 말과 13세기 초 사이에 영지경영제도가 바뀐 원인은 무엇일까? 이미 언급된 대로 포스탄과 밀리는 정치적, 경제적 원인을 들고 있으며,³⁷⁾ 여기에 임대제도가 갖는 영주에 대한 불리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⁸⁾ 따라서 영지경영제도가 바뀐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36) Ibid., pp. 353~354.

37) M. M. Post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 pp. 585~590. *The Medieval Economy & Society: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in the Middle Ages*(Penguin Books, 1978), pp. 107~111. : E. Miller, John Hatcher,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 pp. 210~212.

38) 임대제도가 갖는 불리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지대가 ‘고정불변의 것(firm and unchangeable)’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지대는 비탄력적이었다. E. Miller, “England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An Economic Contrast?”, p. 8; A. R. Bridbury, “The Farming out of Manor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XXI, No. 4, 1978, p. 517, n. 1. 둘째, 임대제는 임차인이 세습을 요구할 위험성이 커다. F. R. H.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요인은 인구증가와 토지부족, 그리고 곡가상승 등에 따르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³⁹⁾

13세기 영국에서의 인구증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런셀(J.C. Russell)에 의하면 1086년에서 1348년 사이에 영국의 인구는 3.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⁴⁰⁾ 이에 따라서 농토가 점차 부족해지고 농업임금의 수준은 하락되어 적영지의 직접경영으로부터 매우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12세기 말경부터 농산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180년부터 1220년 사이에 곡가와 가축의 가격은 2~3배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물가 상승은 1260년대까지 계속되어 그 후 14세기 초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⁴¹⁾ 이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파머들에게 고정된 지대로 임대하여 영지를 경영하고 있던 영주들은 실질수입의 감소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파머들은 오르는 곡가와 가축의 가격에서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같은 상황 속에서 영주들이 임대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오르는 물가에 따라 실질수입은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임대하던 영지의 지대를 인상하는 일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⁴²⁾ 그리므로 영주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직접 경영하는 것만이

Du Boulay, *The Lordship of Canterbury*, p. 201 ; J. A. Raftis, *The Estates of Ramsey Abbey*, pp. 82~85. 세체, 임대제 하에서는 장원의 차원들인 살림, 건물, 틀집 등이 황폐화되거나 고장되는 일이 많았다. E. Miller, "England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p. 10. 포스탄은 그같은 현상을 '파머들의 약탈 depreciation of farmers'로 표현하고 있다.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 p. 586.

39) P. D. A. Harvey, "The English Inflation of 1180--1220.", p. 4.

40) 1086년의 인구는 110만명이며, 1348년의 인구는 375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B. H. Slicher Van Bath, *The Agrarian History of Western Europe A.D. 500--1850*(London, 1963), p. 88.

41) P. D. A. Harvey, "The English Inflation of 1180--1220.", p. 4.

42) 임대를 의미했던 farm은 어원적으로 지대가 고정되었다(fixed, settled)는 것을 의미하는 firm과 연관이 있다. M. M. Postan, *The Medieval England & Society*, p. 109. 당시대의 지대는 고정불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주 38) 참조).

오르는 물가에 관계없이 영지로부터 완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⁴³⁾ 그같은 상황 속에서 영주들은 임대제도를 포기하고 그들의 영지를 회수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비에 의하면 당시의 높은 물가 앙동은 순수히 영국적인 현상이었으며, 또 그같은 이유 때문에 12세기 말과 13세기 초 사이에 영국에서만이 영주직 영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⁴⁾ 물론 당시에 영주직 영제가 처음 도입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며, 영주직 영제의 도입이 순수히 영국적인 현상이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아직은 그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어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⁴⁵⁾ 그렇지만 높은 물가 앙동이 영주직 영제로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하비의 주장은 이제까지의 연구로써 의심할 나위가 없다. 또 당시의 물가 앙동이 영국에서만이 크게 두드러졌다라는 주장도 다른 학자들의 연구로써 입증이 되고 있다. 로저스나 파머(D. L. Farmer), 포스탄, 람프레히트(K. Lamprecht)등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영국에서의 물가 상승율은 150 퍼센트~20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으며, 남서부 독일에서의 물가 상승율은 3~4배나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비버리지(M. W. Beveridge)의 말대로 당시 영국은 “영국 역사상 가장 급격한 물가혁명기의 하나”⁴⁷⁾였던 것이 분명하며, 바로 그같은 물가혁명이 영지경영제도를 바꾸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43) P. D. A. Harvey, "The English Inflation of 1180—1220.", p. 5.

44) Ibid., p. 7.

45) D. Oschinsky에 의하면 영주직 영제는 독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Ibid., p. 7, n. 18.

46) J. E. Thorold Rogers, *A History of Agriculture and Prices in England 1259—1793*, I ; D. L. Farmer, "Some price fluctuations in Angevin England.",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 1956. "Grain price movements in thirteenth-Century England.", Ibid., X, 1957. "Livestock price movements in thirteenth-Century England.", Ibid., XXII, 1969 : M. M. Post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I(Cambridge, 1952) ; K. Lamprecht, *Deutsches Wirtschaftsleben in Mittelalter*, 3 vols(Leipzig, 1885—1886).

47) M. W. Beveridge, "The Yield and Price of Corn in the Middle Ages.", *Economic History Review*, I, 1929, p. 164.

그러면 영지경영제도의 변화가 장원영지의 경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문제는 다음 장에서 고찰될 것이다.

IV.

영지경영제도의 변화는 장원영지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가? 이 문제는 봉작들의 성격과 그들의 영지경영 방법, 영주적영제 하에서의 영지경영의 특징과 그 제도가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 등이 밝혀집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사료의 부족과 부존으로 인하여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밝혀낼 수 없는 문제들로 남아 있다. 특히 ‘12세기의 봉작들은 임대한 장원을 어떻게 경영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장원의 경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는 장원의 회계보고서(Manorial Account)인데, 이는 영주적영제 하에서 영주의 대리인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봉작들은 자신들이 임대하여 경영하면 장원에 대한 경영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⁸⁾ 따라서 그 문제는 간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간접적인 증거로 추론된 임대제도하의 장원구조는 영주적영제 하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봉작들은 적영지의 일부가 아닌 적영지 전체를 또는 장원 전체를 고정된 지대로 임대하여 경영하였기 때문에 적영지의 기능이나 농민의 부역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렇기는 하나 봉작의 임대하에 있을 때의 농민들은 영주적영제로 바뀌었을 때의 농민들보다 좀 더 자유로웠거나 덜 속박을 받았으며, 좀 더 나은 지위를 갖을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⁵⁰⁾

4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 D. 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 pp. 12~34 Manorial Accounting의 발달에 관한 사항을 참조.

49) M. M. Post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 p. 586. 50) *Ibid.*, p. 586.

그러면 12세기의 파머들은 누구였으며 15세기의 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포스탄과 밀터에 의하면 12세기의 파머들은 고정된 지대를 지불하였던 *firmarii*로서 영주계층과 농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층인들 (middle men)이었다.⁵¹⁾ 그러나 그들의 신분을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캠브리 수도원이나 램세이 (Ramsey) 수도원, 엘리 (Ely) 주교령 등에서 나타나는 파머들은 대귀족, 수도원장, 왕의 시종무판장, 수도사, 부주교, 자본가, 기사, 주교령의 집사 등 일반적으로 다양한 신분과 지위의 사람들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⁵²⁾ 그런데 두 불레이에 의하면 15세기의 파머들도 역시 계약문서에 *firmarii*로 나타난 자들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어, 어느 일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⁵³⁾ 그러나 15세기의 파머들은 대부분 *gentlemen* 또는 성장하는 *yeomen*이나 *husbandmen*, 일부의 자유인과 지방 유지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1502년~1532년 사이에 캠브리 대주교령에서의 파머들은 전체의 3분의 1이 *gentlemen*이었으며, 2분의 1이 *yeomen*이나 *husbandmen*이었다.⁵⁴⁾ 따라서 15세기의 파머들은 12세기의 그들에 비해서 좀 더 계층이 다양해지고 좀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달리 말하자면 15세기의 파머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yeomen*과 *husbandmen*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그렇기는 하나 적어도 15세기 말까지는 파머들의 신분을 로저스나 브라이드베리 (A. R. Bridbury)처럼 농민들 (Peasants)로⁵⁵⁾ 단일화

51) *Ibid.*, p.585; E. Miller, "England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An Economic Contrast?", p.2.

52) F. R. H. Du Boulay, *The Lordship of Canterbury*, pp.197~198, 202~203; E. Miller, J. Hatcher, *Medieval England*, pp.206~207.

53) F. R. H. Du Boulay, "Who were Farming the English Demesne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III, No. 3, 1965, pp.443~445.

54) *Ibid.*, p.450.

55) J. E. Thorold Rogers, *History of Agriculture and Prices in England*, p.667; A. R. Bridbury, *Economic Growth: England in the later Middle*

하여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영지경영제도의 변화가 장원경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영주적 영제로의 변화는 영주들의 장원영지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으며, 장원 농민들의 지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가? 영주적 영제로의 전환은 이제까지 파편들에게 임대되면 영지가 영주의 손에 회복됨을 의미한다. 영주들은 회수된 장원영지를 그들의 대리인을 임명하여 관리하였다. 영지의 조직과 관리는 영지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대체로 전체의 장원영지를 관리하는 집사(estate steward)가 있었고, 그 밑으로 각 장원을 책임지는 reeve나 bailiff(혹은 sergeant)가 있었다. reeve는 그 장원에 거주하는 농노들 중의 한 사람으로 보수로서 그의 보유지에 대한 지대와 부역을 면제받았다. bailiff는 자유인이나 또는 장원의 외부인으로서 영주로부터 매년의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다. 장원의 대리인이 reeve 이거나 bailiff 이거나 간에 장원관리인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은 동일한 것이었으며, 장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즉 영지의 경작은 그들이 책임을 지고 매년 장원관리에 대한 결과를 회계를 통하여 영주에게 보고하였다.⁵⁶⁾ 이 같은 영주적 영제도의 도입은 장원경영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영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중세의 어느 시기에서 보다도 농기구, 건물, 방앗간 등에 많은 투자가 있었으며 특히 새로운 경작지의 개간에 큰 투자가 있었다. 2포제를 3포제로 바꾸는 등 경작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밀의 생산에 주력하고 두태류의 경작을 확대하였다. 이 같은 투자와 영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영주들은 곡물생산의 증가에 주력하였던

Ages(2nd edn, Harvester press, 1975). Barbara Harvey는 pesasant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규정이 없어 역사연구에 이용하여 왔다고 비판한다. "The Leasing of the Abbot of Westminster demesne in the Later Middle Age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XXII, No. 1, 1969, p. 17.

56) P. D. A. Harvey,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 pp. 12~13.

것이다.⁵⁷⁾

둘째, 영주적 영제와 더불어 새로운 영지의 경영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영지조사서(Survey)와 회계보고서(Manorial Account)가 그들이다. 장원영지를 직접 경작함에 따라 영주들은 직영지에 대한 면적, 자원, 곡물재배 현황, 가축 수 등 자세한 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영주들은 영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영지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효과적인 영지의 관리에 더욱 중요했던 것은 회계보고서의 도입이다. 회계보고서는 장원관리인이 장원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보고서에는 곡물의 파종면적과 종류, 타작, 판매 등의 처분 현황과 가축 수의 변동, 양털, 우유, 계란 등의 생산 현황 등 모든 직영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과 처분, 또 이를 위한 비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영주들은 장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수입에 대한 현황을 알 수가 있었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관리들을 통제,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영지를 관리할 수 있었다.⁵⁸⁾ 오스친스키(D. Oschinsky)에 의하면 이같이 잘 발달된 회계보고서가 독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영주적 영제의 도입을 영국에서는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⁵⁹⁾

세째, 영주적 영제의 도입과 함께 농민들의 신분적 지위와 사회경제적 인지위는 하락되었다. 영주에 의하여 장원이 직접 경영되었던 13세기에 부역이 강화되고 금납화가 역전되었으며, 직영지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코스틴스키 아래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페나드와 힐تون(R. H. Hilton) 등에 의하면 영주적 영제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농민들의 신분적 지위도 크

57) E. Miller, J. Hatcher, *Medieval England*, p.233; M. M. Posta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I, p.583; F. R. H. Du Boulay, *The Lordship of Canterbury*, p.245.

5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D. A. Harvey, ed., *Manorial Record of Cuxham, Oxfordshire C. 1200-1359*, pp.12~34 참조.

59) D. Oschinsky, *Walter of Henley and other Treatises on Estate Management and Accounting*(Oxford, 1971), pp.72~3, 213~214. P. D. A. Harvey, "The English Inflation of 1180-1220.", p.7, n.18 참조.

개 하락되고 있다. 레나드에 의하면 품즈테이 북(Domesday Book)이 작성될 때(1086년)에는 빌런(Villain)들은 자유민에 속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영주에게 부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한 보유지에서 내쫓기지 않았으며, 그들과 영주 사이의 서약은 왕의 법정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13세기에 와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빌런들은 로마 법에서의 노예들과 같이 취급되었다.⁶⁰⁾ 헬تون에 의하면 이들 빌런들의 법적 지위는 12세기 동안에 서서히 하락된 것이 아니라 1180년~1200년 사이에 급격히 파국적으로 하락된 것이었다, 영주들이 농노들을 강제하고 그들을 장원관습에 묶은 것은 “오르는 물가에 따르는 경제적인 압력 때문”이었다. 즉, 헬トン은 영주들의 압력이 기초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전가되어 그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⁶¹⁾ 따라서 헬تون은 당시대의 인플레이션을 농민들의 지위를 하락시킨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하비 역시 바로 그 같은 인플레이션이 영국에서의 부역소멸을 200년이나 지연시켰던 주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⁶²⁾

V.

1930~40년대에 시작된 중세 영국에서의 영지경영제도에 대한 연구는 중세시대의 경제변동에 대한 포스탄의 새로운 이론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는 50년대의 논쟁을 거치면서 확산되고 종합되어 60년대에 그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증적인 사료에 의한 검증은 70년대에 Pipe Rolls의 기록이 연구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제 하비(P. D. A. Harvey), 밀러(E. Miller), 킹(E. King), 다이어(C. Dyer), 볼顿(J. L. Bolton) 등에 의하여 70년대 말과 80년대에 출간된 연구서들은

60) R. V. Lennard, *Rural England 1086—1135*, p. vi.

61) R. H. Hilton, “Freedom and Villeinage in England.”, *Past and Present*, No. 31, 1965, pp. 13~14.

62) P. D. A. Harvey, “The English Inflation of 1180—1220.”, p. 23.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을 수용하여, 개별 영지에 대한 연구나 또는 중세 영국 경제사를 서술하고 있다.⁶³⁾ 이에 따라서 중세시대 장원의 고전적인 모습이며 전형으로 생각되었던 영주적 영제도는 실상은 13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간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13세기의 제특징들로 생각되어지는 부역의 강화와 금납화의 역전, 농민의 법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적극적인 농업경영과 기술개발,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등은 영주적 영제라는 관점에서 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관점은 중세의 영주체총을 소비자로서만이 아닌 생산관리자로서 새로이 조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중세사회의 발전에 대한 주체세력으로서 그들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만 영지경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중세 영국 경제사의 시대구분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미 언급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첫째, 13세기의 영주적 영제도가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였는가 아니면 앵글로-색슨시대부터도 존재하였던 것인가. 이와 아울러 영주적 영제는 영국에서만 나타났던 독특한 제도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가 밝혀져야만 한다.

둘째, 임대제도와 영주적 영제가 농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지위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가가 비교적으로 더 자세히 연구되어져야 한다. 특히 12세기와 그 이전 시대에 파미들이 임대했던 직영지를 어떻게 경영하였는가가 밝혀져야만 한다.

셋째, 영주적 영제로 바뀔 때 나타났던 지역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와 영지 사이(세속영지와 수도원영지, 그리고 교회영지)에 대한 특성의 차이, 영지 규모 사이에 대한 특성의 차이들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3) P.D.A. Harvey,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 1200-1359*; E. Miller, J. Hatcher, *Medieval England*; E. King, *England 1175-1425*(N.Y., 1979); C. Dyer, *Lords and Peasants in a Changing Society: the Estates of the Bishopric of Worcester, 680-1540*(Cambridge, 1980); J.L. Bolton, *The Medieval English Economy 1150-1500*(London, 1980).